

-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불합리에 따른 청원(거의2동) - 의견서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구미시 거의2동 지역 주민들의 땅은 국립금오공과대학 이전부지와 진입도로, 4공단 조성으로 많은 토지가 편입되었고, 남은 토지는 금번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의해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해당 주민들의 생존권과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 입안의 주체인 구미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토록 의결하였다.

다 음

- 도시계획결정은 장래 구미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서,
- 지역의 균형발전과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거의2동의 경우에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2002. 10. .

구미시의회의원일동